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3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김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포항시 북구 D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부합된 E(이하 'E'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E의 소유권이 이 사건 회사에게 있음을 주장해 왔다.

피고인은 2021. 4. 6. 14:30경 위 D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21. 1.경 포항시에 새로운 온천공 개발을 위해 토지굴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E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E의 지면 위로 노출된 봉 부분을 잘라내고, 온천공 안에 돌과 시멘트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E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F의 소유이고, 이후 F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E의 소유권이 현재 토지 소유자인 C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권리가 C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E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와 C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수년간 E에 관한 권리 주장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이어져왔다.

- F이 경북 영일군 G 일원에서 3개의 온천을 발견한 후 1991. 11. 1. 영일군수에게 자신을 온천발견자로 하는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영일군수는 1992. 12. 1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 F과 피고인 및 H은 1993. 7. 9.경 온천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F과 피고인은 같은 해 12. 28.경 F이 위 3개의 온천공(I, J, E) 및 그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온천 지구의 지정고시를 책임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F이 영일군수에 대하여 1994. 1. 6.경 온천지구지정신청인의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으나, 온천발견자의 명의변경신고는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C이 1997. 7. 31.경 포항시장(1995. 1. 1. 영일군이 포항시에 편입됨에 따라 영일군수의 사무를 승계하였다)에게 자신이 1994. 9. 6.경 F로부터 1, 2, E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포함한 온천공 및 개발권을 양수하였다고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신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1997. 12. 12.경 수리되었다.

- 이후 C은 E이 발견된 K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답 68㎡'에 관하여 2001. 8. 1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E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C은 F로부터 1, 2, E 및 개발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주장하는 양수시점은 F과 피고인 사이의 위 약정에 기한 권리가 이전된 이후로서 위 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F에게 양도대상 권리가 존재하였는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E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법적 분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제18조),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을 탐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조사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물건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20조),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5조 제1항),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온천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서 온천의 탐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탐사 등으로 온천을 발견한 자가 이를 신고하여 수리가 된 경우 온천 발견자로서 굴착허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지,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그 지반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온천 발견자로 신고할 수 있다거나,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여 새로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5142 판결 참조). 따라서 C은 E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 E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온천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



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이러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 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F이 E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C이 F로부터 E 및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을 등재하는 등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온천법이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이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이나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공 발견자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참조). 따라서 C이 E에 관하여 온천발견자의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당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회사는 2020. 9. 19.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 주주 6명 중 3명이 참석(주식총수 40,000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수 33,600주)하여 '온천공(I, J, E) 소유권에 관한 사용권양도 및 처리 등 제반조치 건(제1호 안건)'에 관하여 E에 관한 제반조치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E은 개발목적에 따른 개발·이용·관리 불가능과 환경오염방지 및 공공안전을 위



해 부득이 폐공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E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⑦ C은 2018. 12. 31.경 포항시장에게 E이 있는 부지를 포함하는 포항시 남구 L 일원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포항시장은 2023. 12. 14.경 "온천법 제2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님", "온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온천자원평가조사보고서 부적합"을 이유로 C에게 B 개발계획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하였다. 이에 C은 포항시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3. 25.경 C이 최초 온천발견자 F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발견 신고 당시 신고자 F은 I, J, E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점, C은 J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E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K에게 2001. 8. 11.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C을 해당 온천공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고, 비록 C이 온천공에 대한 온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포항시장의 C에 대한 B 개발계획승인 신청 반려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현숙 _____